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33 발의연월일: 2024. 8. 2.

발 의 자 : 윤건영・조 국・박지원

신정훈 • 이기헌 • 전현희

문정복 • 한병도 • 이해민

이성윤 • 백승아 • 염태영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·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.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·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.

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·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임.

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·의료 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 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·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4 신설).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0조의4(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의 제출) ① 의료기관 개설 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목록과 수량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처리 방법, 기한 등을 기재한 처리 계획서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처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92조제3항에 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6. 제4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계획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처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리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 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한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제40조의4(의약품 및 의료기기  |
|                     | 처리계획서의 제출) ① 의료기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  |
|                     | 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보유하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목록과 수량을 확인하고 보건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처리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방법, 기한 등을 기재한 처리계  |
|                     | 획서를 관할 시장・군수・구청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따라 제출한 처리계획을 이행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<u>하여야 한다.</u>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항에 따른 처리계획서를 받은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경우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     |
| 제92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 | 제92조(과태료) ①・② (현행과 |
|                     | 같음)                |
|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| ③                  |

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3의5. (생략)

4. ~ 8. (생 략) ④ (생 략)

<신 설>

-----. 1. ~ 3의5. (현행과 같음)

1. ~ 3의5. (연행과 살음)
3의6. 제40조의4제1항 또는 제2
항을 위반하여 처리계획서를
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계
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